

학생연구원 관리 지침

제 정 : 2020. 2. 1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본 대학 소속으로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연구원'은 본 대학 학사·석사·박사과정중에 있는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본 대학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과제관리시스템'은 본 대학교에서 연구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을 말한다.

제3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한다.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한다.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즉,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4.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연구참여협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학생연구원은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한다.
4.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제5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참여협약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7조 (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8조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결과물의 소유)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중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 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11조 (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을 과제관리시스템에 과제등록시 설정하고, 학위과정별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④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⑤ 학생인건비 비목은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2조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 보장) 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관리부서는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상담 창구운영) 관리부서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부서가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실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개인 업적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